

지었다. 게다가 결국 형사들이 소청심사를 제기해 '견책'마저도 취소되었다. 결과적으로 형사들이 받은 처벌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인권센터와 한씨의 부모님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국가와 형사 3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와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수사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병원이용비, 심리적 불안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막중했다. 심지어 한씨의 아버지는 이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가족들이 이문제로 인해 겪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 결국 중간에 소취하가 이루어지며 어렵게 끝났다.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3] 가족 모두 정신지체인, 아무런 지지체계가 없어 더욱 심각(삼례 할머니 3인조 강도사건과 여수 개도둑 사건)

가족 모두가 정신지체를 갖고 있어 형사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줄만한 사람이 없다면 고스란히 가해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인권센터에 직접 의뢰되었던 것은 개도둑으로 몰린(2002. 12.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아들이 정신지체인이고 형, 아버지 등 일가족 모두가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경우였다.

2002년 12월, 쌍둥이 안군형제(형제모두 정신지체, 17세)는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 개농장을 지나다가 묶여있는 개가 귀엽다며 만졌고, 이를 본 주인은 개도둑이라고 생각하여 이들 형제중 동생을 잡아 폭력을 휘둘러 턱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을 본 아버지 안씨(정신지체 2급, 49)는 농장주인을 고발하려고 파출소에 갔는데 오히려 안군형제들이 절도미수로 긴급체포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더욱이 문제는 안군형제중 형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머리를 박게 하고 폭격자세의 기합을 주고, 욕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경우는 이웃인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던 터라 다행히 사회적으로 문제화될 수 있었다. 안씨가족을 돌보고 있는 조목사는 이들이 과거에도 파출소에서 벌을 받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며, 경찰들은 이들에 대해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이웃이 이러한 구체적 문제에 도움을 주고 개입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수사관들도 '객관적'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장애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2000년도에 있었던 '삼례 할머니 살인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 사건은 인권센터에서 직접 상담한 사건은 아니며 언론(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되면서 접하게 되었다. 1999년 삼례에서 3인조 강도에 의해 할머니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 근처에 살고 있던 정신지체 3급의 최씨(장애인등록증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신지체5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와 역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그의 친구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결국 자백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어느 것 하나 사건정황과 일치하지 않았다. 최씨의 경우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정신지체를 갖고 있어서 아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시골이라 어느 누구나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교도소 안에서 상담활동을 하던 교회의 상담자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되어 재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부산에서 진범으로 추정되는 세사람이 잡히게 되었다. 피해자 가족의 진술대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내용도 정확하게 일치했다.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진범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조차 최군과 그의 친구들이 범인일 리가 없다며 재수사를 원했다. 그러나 재심청구는 '전주지방검찰청이 피고인 최씨가 진범이라고 주장한 배씨등 세사람

에 대하여 이들이 진범인지 여부를 내사하였으나 '혐의없음'(이는 범죄가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소할 만큼 증거가 없을 경우에 검찰이 내리는 결정임)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법원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이를 거부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후 피고인들은 재심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더 이상의 상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더 이상 유죄판결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 결국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형을 다 살고 만기출소하였다.

【사례4】 청각장애인,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수화통역지원 절실

수화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가끔 경찰서로 수화통역을 하러 나가곤 한다. 처음에는 한 경찰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수화통역을 해 준 적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속에서 알게되었는지 이제는 다른 경찰관에게서도 연락이 온다. 그러나 김씨는 수화통역을 나갈 때마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화통역사를 부르는 것에 대한 법의 규정이 없고 그저 통역 인만이 법률조항에 제시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경찰관들은 개인적으로 아는 수화하는 사람을 급한 대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법대출신이어서 다행히 법률용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통역이 가능했던 적도 많았다. 법률용어에 있는 단어들이 수화로는 단어자체가 없거나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작은 단어 하나 해석을 잘못했다가는 청각장애인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경찰서로 수화통역을 나갈 때마다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수화통역사의 배치가 청각장애인의 형사상의 문제와 직결됨을 알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고 가야했고, 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경찰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사례5】 시각장애인여성 성희롱 고소에 대한 무시

시각장애1급여성인 정씨는(25세) 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다. 시각장애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무시와 회통을 자주 당해오던 정씨는 지난 2003년 8월 80대 노인으로부터 지팡이로 찌르고 엉덩이를 맞는 등의 추행을 당해왔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정씨가 이전에 2차례의 '성희롱'신고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에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 저 할아버지가 아가씨 엉덩이를 만졌겠느냐?"며 피해자의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매우 화가난 정씨는 인권센터로 상담을 의뢰했다. 인권센터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송파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송파경찰서는 청문감사를 통해 해당 경찰관과 지구대책임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경찰관은 '자신으로 인해 실시된 장애인권교육에 참석도 하지 않은채 현재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사례6】 시각장애인, 대필 대독서비스 거부

지난 2001년 2월, 임씨(시각장애 1급, 52세)는 동업자와 다툼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임씨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할수 없으니 자신의 직원중 한명이 동석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조사과정에서 그럴수 없다며, 동석을 거절하였다. 할수 없이 조사를 끝낸 임씨에게 경찰은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를 낭독해 주었고, 낭독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임씨에게 확인도장을 찍기 위해 임씨의 손을 잡

아 여러 차례의 도장을 찍었다. 조서의 내용도 경찰이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것도 경찰이고, 자신의 손을 잡아 어디에 도장을 찍는지 확인해 주지 않은채 그저 도장을 찍는 사람도 같은 경찰이었다. 이에 임씨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진술서를 확인할 수 없고, 자신의 도장을 어떻게 찍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 했지만 묵살되었다.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수사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수사상 장애로 인해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서는 올여름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구모임'¹²⁾을 꾸려 침해사례 수집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 관심이 취약한 상황에서 선행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 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대한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동 연구모임에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 및 이에 개선방안'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지체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진술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진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진술보조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장애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 제 241조와 제 242조에 의한 「피의자의 인정신문단계」'에서 장애유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자는 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또 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날 우려가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긴 하지만 자칫 또 다른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진술보조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을 살펴보자. 형사소송법 제 33조 【국선변호인】에서는 "피고인이 농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확대하여 재판단계뿐만이 아닌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정신적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본인과 가족 또는 보호자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수사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181조 【농아자의 통역】에서는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실효성이 낮고 장애인

12) 2003년 8월 '수사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꾸려짐. 현재 태원우변호사(법무법인 백상 소속), 고영신변호사, 33기 사법연수생 중 김좌진, 소라미, 이정우연수생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소장, 박숙경팀장, 김정하 간사 등이 참여하고 있음

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농자'와 '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따라서 수화통역서비스에 대한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수사과정에서의 잘못된 통역에 의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용어에 대해 이해가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수화통역사'를 선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수화통역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자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수화통역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수립, 예산 배정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병변 장애로 인한 언어장애인의 경우 필요한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장애상태에 따라 필요한 지원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역이 이루어지되 당사자 본인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당사자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필·대독·점자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은 경찰 또는 검사가 일방적으로 불러주는 진술내용을 듣고 하라는 대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 경찰과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 또는 피해자 신분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원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에 의한 진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또한 점자서비스와 저시력장애인을 위한 글자확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용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적절한 용어사용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 181조의 '농자'와 '아자'는 각각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용어로 개정되어야 한다. 용어는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장애인에 대한 법적 용어가 바뀐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많은 법규들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시 장애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용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올바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의 '장애인 보호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법무부에서 지난해 12월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인권보호수사준칙」 제8조 【장애인, 청소년의 보호】는 "검사는 심신 장애인 또는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보호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6조 【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서는 "진술인의 연령이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술하는 내용을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술인이 연소자이거나 심신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이나 친족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한다."고 하여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보조인선정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동 준칙은 법적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검사가 관여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수사과정에 대한 적용이 되고 있지 않

다. 또한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했음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하여 이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명령이나 규칙 또는 지침 등을 통해 담아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수사 절차상 인권 보호

허윤진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이라 불리는 소수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사 절차상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감사한다.

1. 검찰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검찰에 의해 사건이 처리된 국민은 모두 2,414,841명이었다. 물론 이중에는 죄가 없다든지,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단순 교통사범도 상당 수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240여 만명이라는 숫자는 성인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수사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오늘 우리가 이 토론회를 통해 관심을 보내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겪게 된다.

2.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만났다. 굳이 독일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했던 광부나 간호사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주노동을 하고 있으며, 한푼이라도 더 임금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는 이주노동의 현실은 사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은 인종에 대한 차별적 편견이 큰 편이다. 수사라고 할 수는 없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행정활동이겠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등록(불법)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과정에서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에서 온 같은 아시아의 노동자들은 집중적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반면, 미국이나 카나다 등에서 온 1세계의 노동자들(주로 영어 학원 등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다)은 같은 미등록(불법) 체류임에도 불구하고, 단속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단속되어 강제추방을 당하는 일도 전혀 없다.

이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인종에 대한 차별적 편견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일이다. 법무부 - 출입국 관리소 - 검찰 등이 인종에 대한 차별적 편견을 갖고 있다면, 이는 수사상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도 매우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동남아 출신의 이주노동자의 진술보다 한국인의 진술을 더 귀담아 듣게 되는 이를테면 핏줄 땡김 현상은 물론이고, 동남아 출신의 이주노동자의 진술보다 미국 출신의 이주노동자의 진술에 더 귀기울이는 현상은 법집행 공무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인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집행 공무원들의 뿌리깊은 인종적 편견을 바로 잡는 길인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은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강도 높게 받는 것이다. 인권단체에 의뢰하여 검사를 포함한 법집행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인권교육을 통해 인종적 편견을 거둬낸다고 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환

국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주노동자들에게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자국의 언어로 더 친절하게, 더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4.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통역 문제도 심각하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대충 진행하거나 - 네팔 출신의 여성노동자 찬드라가 정신병원에 갇힌 이야기는 참담하기까지 하다 - 또는 기껏해서 통역이 진행되어도 중역(重譯)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사법절차에 대해 무지한 이주노동자가 중역을 통해 표현하는 의사는 왜곡되기 쉬우며, 경찰 - 검찰 - 법원이 매우 많은 사건들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법집행기관이 이주노동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해듣기 위해 인내에 인내를 거듭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한 배려가 따라야 한다. 각 기관은 각 언어별로 능통한 통역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사건을 맡는 별도의 팀을 운영해야 한다. 여건상 이주노동자들만을 전담하는 팀의 구성은 어려울지라도 특정한 팀이 이주노동자들의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그 팀에 속한 인력들이 언어와 인권감수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또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매우 저렴하거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조사과정에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등,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한국인의 입회를 변호사 접견에 준한 수준으로 허용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돋는 것도 중요하다.
6.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형사사법절차에 따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며, 불리하다. 우리는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갈망하고 있는데, 정의의 실현은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불리한 것을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게 만드는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과 인력이 수반되나, 우리의 경제여건이나,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따라 최소한의 투자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7. 오늘은 유엔총회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세계인권 선언의 정신에 따라, 또 우리 헌법의 정신에 따라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형사사법절차와 또 이러한 절차를 보완하는 안전한 시스템으로 우리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주는 고마운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람대접을 해보도록 하자.
8. 저는 역시 신부이기에 마지막 말씀은 성서의 말씀으로 맺고 싶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상설교를 마치신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겼다. 마태오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그 보호

趙均錫 (大邱地方檢察廳 金泉支廳長)

I. 犯罪被害者の 人權

“범죄피해자에게도 인권은 있는가?” “있다.”

이 당연한 물음과 대답이 왜 새삼스럽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범죄피해자(이하, 피해자 본인 뿐아니라 가족·유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의 인권이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또 다른 가치의 그늘 아래 가려져 무시되었던 현실에 대하여, 이제는 반성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재조명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위 幸福追求權의 해석상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인격의 존엄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밖에,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제30조는 구조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헌법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범죄에 의하여 시민이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시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 를 취함과 동시에 이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國家의 人權保護義務論에 비추어 보아도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자연히 도출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제34조 제6항 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는 규정하고 있는데,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재해 뿐아니라 범죄로부터의 보호의무 또한 국 가의 의무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왜 당연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그 동안 무시되어 왔 으며, 외국인근로자, 동성애자의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소수자의 인권이 부각되는 오늘 에도 범죄피해자의 인권만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 아니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19세기말 20세기 초의 국가의 전제권력, 특히 경찰 권력이 비대하여 범죄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자 법률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범 죄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려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를 아직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는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

순한 증거수집의 대상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하여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명실상부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도 변하여야 한다. 이제 피해자는 가해자의 그늘에 숨어 고통을 혼자 참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 를 주장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한다.

스테펜 쉐퍼(Stephen Schafer)의 말처럼, 이제는『被害者』가 찾아온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말에 찾아온 르네상스가 우리에게는 조금 늦게 찾아오기는 하였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여 더 멋진 꽃을 피워야 할 것이다.

II. 犯罪被害者에 대한 支援

1. 支援의 必要性

(1) 우리 나라는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2000년 1,867,882건에서 2001년 1,985,980건으로 6.3% 증가), 특히 중요 5대범죄인 살인(2003년 1~9월간 전년 대비 4.2% 증가), 강도(32.7% 증가), 강간(5.7% 증가), 절도(11.3% 증가), 폭력(4.0% 증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¹³⁾ 또한, 2003. 2. 18. 발생한 대구 지하철참사(192명 사망, 147명 부상)와 같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대형참사가 빈발하는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범죄나 사고가 증가할수록 피해자도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2) 대다수의 범죄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없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스스로의 결심으로 일생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기 뜻대로 일생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점에서 국민 모두가『潛在的 犯罪被害者』인 것이다.

(3) 범죄의 피해는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 즉, 상처·마비·질병감염 등의 신체적 피해, 재산손실이나 경제활동 제약 등 경제적 피해, 충격·공포·분노·자책 등 정신적 피해에 그치지 아니한다는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 오히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 매스컴의 취재나 주변 소문 등에 의한 사생활침해, 가족관계의 악화 등 2차적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범죄라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에 생기는 감성적·생리적 반응인『心的 外傷後 스트레스障害』(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대부분 피해자들은 이것을 질병으로 생각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아야 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방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이와 같은 현실하에서, 1차적으로 국민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앞장서고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犯罪被害者(victim)가 안심하고 피해로부터 회복하여 生還者(survivor)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13) 경찰청의 범죄시계에 의하면, 2003년도 3/4분기에 살인은 8시간10분, 강도는 48분, 강간은 1시간10분, 절도는 2분18초, 폭력은 1분37초 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동아일보 2003년 11월4일자 A30면).

14) 최근 10년내의 주요 사건으로, 1994.10.21 성수대교 붕괴(사망 32명, 부상 17명), 1995.4.28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사망 101명, 부상 202명), 1995.6.28 삼풍백화점 붕괴(사망 502명, 부상 937명), 1999.10.30 인천 호프집화재(사망 57명, 부상 80명) 등이 있다.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被害者의 權利와 支援의 種類

범죄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1985.11.29. 유엔총회는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업의 기본원칙』을 선언한 바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권리장전』이나 법률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로 ① 공정한 처우를 받을 권리, ②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피해회복의 권리, ④ 의견을 진술할 권리, ⑤ 지원을 받을 권리, ⑥ 재피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 ⑦ 평온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¹⁵⁾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이러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피해자 지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60년대는 경제적 지원, 70년대는 민간단체의 지원, 80-90년대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 경제적 지원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구제)제도는 196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제정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요건이 엄격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큰 실효를 보지 못한 채 매년 활용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¹⁶⁾

그 외 경제적 지원으로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범죄신고자 구조금, 자동차손해보장, 의사상자 예우 등 제도가 있으나, 이 역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¹⁷⁾

(2) 민간 지원

미국의 범죄피해자보호협회(National Organization of Victim Assistance : 1975년), 영국의 범죄피해자지원협회(Victim Support : 1979년), 일본의 피해자지원센터(1995년)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 단체에 의한 체계적인 피해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개별범죄에 대하여 민간 지원단체가 90년대 초반부터 활동하고 있을 뿐, 선진국과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3. 9. 5.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김천·구미 지역에서 최초로 『피해자지원센터』가 창립되었고, 이어서 2003. 11. 21. 대전에서 광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법적·제도적 지원

1985년 유엔에서 기본원칙이 채택된 이래, 많은 나라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15) 1999년 5월 15일 일본의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범죄피해자의 권리선언』에 열거된 권리이다.

16) 2001년 97건 9억 4,600만원 신청에 76건 6억 2,010만원 지급되었던 것이 2002년에는 모두 줄어 들어 83건 7억 9,400만원 신청에 50건 4억 7,250만원 지급되었다.

17)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제도 - 알아두면 도움됩니다, 인권매뉴얼 제1호, 2003년 9월 참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198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한 이래 성폭력처벌법(1994년), 가정폭력방지법(1997년) 등을 제정하고, 증인이나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을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미흡할 뿐아니라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아니하다.

III. 搜查節次上 犯罪被害者の保護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범죄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종래부터 법률이나 지침 등 여러 형식을 통하여 수사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¹⁸⁾ 피해자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여러 사유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2003년 5월부터 대검찰청에서 검찰개혁자문회의의 4대 과제의 하나로 『범죄피해자의 보호 강화』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에 경찰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2003년 9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권매뉴얼 제1호를 발간하여 전국 경찰에 배포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금년 8월 이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한다.

(1) 범죄피해자보호 강화 지침(2003. 8. 11)

- ① 피해자전담검사 및 전담관 지정
- ② 피해자상담실 설치 및 피해자 핫라인 개설
- ③ 피해자통지 확대

종래의 고소·고발인 통지나 공판개시통보에서 한 걸음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형사재판기일 및 경과, 출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피해자가 원할 경우 통지를 확대하였다.

④ 수사·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강화

피해자구조제도나 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홍보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안내 및 피해자 법정동행 등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해자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2) 경찰에 대한 수사시 피해자지원 강화 지시(2003. 10. 1)

18)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 제도에 대하여는 전현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 대전·충남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창립총회 및 학술회의 발표자료집(2003.7.8)에 잘 정리되어 있다.

① 범행현장에서의 신속한 직접지원 조치

사건 직후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피해자지원의 핵심이다. 따라서, 사건발생 초기의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이, 중심이 되어 피해자지원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이런 까닭에서 이다.

이를 통상 危機介入(crisis intervention)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안전 확인 및 확보, 친족에의 연락 등 대행서비스, 초기 카운슬링, 정보제공 등이 이에 속한다.

살인 등 강력범죄나 대형 교통사고 등 피해자지원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에 신속하게 직접지원 활동을 하도록 경찰에 지시하고, 지청장이 직접 관내 김천경찰서와 구미경찰서 수사관을 상대로 2회에 걸쳐 피해자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② 각종 보고시 피해자동향란 신설

중요사범 발생보고시, 수사지휘 건의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피해자 조사시에 반드시 피해자동향란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상황과 피해자지원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③ 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

④ 피해자전담관 지정

IV. 民間 被害者支援센터의 役割 -金泉·龜尾의 例

1. 概要

우리 나라 최초로 2003. 9. 5. 김천·구미 지역에 민간의 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¹⁹⁾

(1) 조직

지원센터는 이사장(구미순천향병원 원장), 부이사장 2명(범죄예방지역협의회장, 범방 후원회장), 전무이사(정신병원 원장 겸 범방 간사), 사무국장(전 김천시 총무국장 퇴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법률·상담 전문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회원과 후원회원이 있다.

(2) 재정

김천시와 구미시의 보조금, 범죄예방지역협의회의 후원금 및 회원의 회비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3) 활동

①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19) 상세한 내용은 피해자지원센터·한국피해자학회, 범죄피해자 지원, 2003년 참조.

2003. 9. 5. 설립 이래 11.30. 까지 총 상담건수는 113건(상담자 57명 : 남 28명, 여 29명)으로, 전화상담이 57건, 면접상담이 56건이다. 유형별로는 피해자와 관련된 법률상담이 93건으로 가장 많고, 의료 6건, 가정폭력 5건, 성폭력 4건의 순이다. 법률상담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공익법무관이 월 1회 출장상담하고 있고,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료상담 분야에 더욱 힘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별로는 113건중 구미가 86건으로 가장 많으나, 김천지청 관내를 벗어난 대구 등 경북지역도 22건나 되고 멀리 부산도 3건이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범죄피해자의 지원수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피해자로서 상담을 하러 온 뒤 지원센터의 취지에 찬동하여 스스로 회원이 되어 후원금을 납부한 사람이 8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지원센터로서는 더욱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커다란 격려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직접지원 활동

피해자지원센터가 다른 기존의 상담소와 차별화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 바로 직접지원 활동이다. 직접지원은 사건직후의 위기개입, 정보제공 및 소개, 수사기관 및 법정의 동행서비스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찰이나 검찰의 요청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편지쓰기 등 찾아가는 직접지원 체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③ 피해자지원 전문가 양성

④ 피해자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

⑤ 피해자 自助組織(Self Help Group) 지원

⑥ 홍보활동

피해자지원의 필요성을 널리 정부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이 초창기에는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지원센터는 ① 로고·심볼마크 제작, 배지 교부 및 포스터 제작·관공서나 버스 등 게시, ② 센터뉴스(피해자지원포럼)·연수교재·안내리플렛 등 자료 발간, ③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실시, ④ 기금모금 자선행사, ⑤ 홈페이지(www.victim.or.kr)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事例 紹介

(1) 사안 개요

피해자 김OO(여, 42세)는 2002. 12월경 피의자 A(남, 39세)와 재혼 후 8개월 동안 월 1-2회 폭력을 당해 오다가 2003. 9. 1. 김천경찰서에 폭력행위로 고소함과 동시에 김천지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9. 22.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하였다.

(2) 검찰과 피해자지원센터와의 협조

피해자 상담결과, A는 김천지원으로부터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접근금지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커서 이혼소송 법정에 혼자 가기 무섭다며 동행을 요청

하였다. 이에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김천지청 피해자전담관에게 동 사례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여 법정동행 등에 대응할 수 없는지 협조를 요청하였다.

(3) 진행상황

2003. 9. 24. 김천지원의 이혼소송 법정에 김천지청 피해자전담관과 피해자지원센터의 자원봉사자가 피해자와 동행하였으며, 9. 26. 김천경찰서의 고소사건 조사시에는 피해자지원센터의 자원봉사자가 동행하였다. A는 2003. 11. 29. 폭력행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진행중이며, 이혼심판청구소송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이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재판진행중이다.

V. 犯罪被害者支援의 政策方向

1. 沢政府 次元의 關心 提高 및 政策 推進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은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와 같은 단순한 형사정책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도 노인이나 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과 같은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형사절차에서의 보호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택·건강·교육 등 더욱 다양한 복지 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²⁰⁾

따라서, 피해자 보호문제를 경찰이나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보건복지부나 여성부 등 법정부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처별로 가능한 정책들을 협의한 후에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도 하루 빨리 총리실 산하에 「被害人保護關係部處協議會」(가칭)를 구성하여 법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보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2. 被害者支援團體의 法的 根據 賦與

피해자지원센터 등 민간 지원단체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일본과 같이 범죄피해자구조법을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둘 수도 있고,²¹⁾ 대만과 같이 「犯罪被害者保護法」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²²⁾ 민간 단체가 법적 근거를 가진 공익단체가 되어야만 전

20) 선진국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복지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VS는 2002년 「Criminal neglect - no justice beyond criminal justice」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그간 형사사법시스템 안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많은 시책이 시행되었으나,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거의 인식되고 있지 아니함을 지적하고 있다.

21) 2001년 「범죄피해자급부금등지급법」을 개정하여 「범죄피해자등조기지원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22) 1998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재) 범죄피해자보호협회」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무성 보호국에서 담당하고 감독한다.
2. 본부는 개생보호협회에 병설되며, 보호국 사무실을 사용하고, 21개 검찰청 소재지에 보호관찰소에 병설되는 형태로 지소가 설립되며, 검찰청 사무실을 사용한다.
3. 각 지소 보호협회의 이사장은 지방검사장이 겸무하고, 보호협회총회의 이사장에는 대만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맡는다.

국적으로 통일된 양질의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기부에 대한 세금감면 등 혜택으로 보다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공적인 감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적인 근거를 부여할 경우, 어느 부처가 이를 감독할 것인지를 문제된다. 일본의 경우 범죄피해자구조법이 공안위원회 소관 법률인 관계로 공안위원회(경찰)이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법무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법무부 소관 법률인데다 수사의 주체자인 검사의 공익적 기능에 비추어 대만의 예와 같이 법무부와 검찰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예방위원회와 피해자지원센터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지원은 수레의 두바퀴와 같은 것이므로, 두 단체는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생각컨대,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진 범죄예방위원회의 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자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아가, 보다 안정적인 지원활동을 위하여『被害者支援基金』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3. 民間團體의 設立 擴散 및 力量強化

우선, 민간단체의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관심만 가진다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민간단체를 내실화하여 그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인(人)·물(物)·금(金)·활동의 면에서 간단히 살펴본다.

(1)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중요하다. 아직까지 자원봉사의 역사가 짧고 그 기반이 약한 우리 나라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어렵다. 단순히 몸을 움직여서 하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법률지식과 상담기법이 필요한데다 새로운 분야인 피해자지원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연수회 개최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따라야 한다.

(2) 사무실이나 집기 등 시설 자체는 자체 재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것 이외에 조직이 발전해 나갈수록 회원관리나 활동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재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 민간단체 재원의 97%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민간단체가 공익법인화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면 후원금의 모금도 더욱 용이해 질 것이다. 지원센터로서는 다양한 방법의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활동의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찾아가는 피해자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피해자의 수요에 따른,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춘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늦게 출발

4. 예산은 법무부와 내무부에서 지원한다.

참고로, 보호협회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강제보험제도 활용)와 성범죄피해자(경찰 담당)에 대한 보호업무는 담당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선진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통하여 앞선 제도를 배워 이를 기반으로 조속히 우리식 지원제도를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나라 사람이 일본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그 나라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또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언젠가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부

수사 관료 보조관 전원 학술
회원 공인회 전원 학술 대회

[제 3 부]

수사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등 인권 침해 방지 대책

수사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강 훈 (한국일보 법조출입 기자)

1. 머리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의 자유와 인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축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 인권이 침해를 받고, 반대로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등 두 권리는 충돌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최근 방송과 신문 등 언론 매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기사의 양이 절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언론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시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를 상대로 모두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들은 노대통령 측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언론 압박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일부 언론사는 사설 등을 통해 이 나라의 언론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자간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은 최근 20여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된 중재 신청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1년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중재신청 건수는 44건에 불과했지만, 84년 54건, 88년 55건을 기록한데 이어 89년에는 121건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이후 중재 신청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94년 541건, 98년 602건, 2002년 511건을 기록했으며 올 들어서는 지난 상반기 현재 314건을 나타냈다. 20여년 사이에 10배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서울지방법원에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 등도 급속히 늘어났다. 실제 올해의 대형 사건 중에는 보도와 인권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케 하는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많았다.

2. 실제 수사 보도로 본 명예훼손 논란

@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 의혹 사건- 언론의 과열경쟁

올해 4월 서울지검 특수1부가 담당했던 월드컵 휘장사업권 로비 의혹 사건은 2000년부터 3년간 깃발과 배너, 티셔츠 등 월드컵 휘장상품의 사업권을 놓고 CPP코리아와 코오롱TNS가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게 쟁점이었다.

이 사건은 특히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가 맡은 데다 초대형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왔던 새 정권 초창기라는 측면이 고려돼 언론의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검찰 사건의 특성상 수사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각 언론사 법조 출입기자들은 휘장상품 하청업체 등 사건 관련 업체와 주요 고발인 등을 상대로 외과 취재에 돌입했다.

기자들은 또 한밤 중에 조사를 받고 나온 핵심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 과정에서 무슨 진술을 했는지 검사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등을 취재한 뒤 즉석에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

예를 들어 그날 소환된 핵심 관계자가 국회의원 K씨에게 얼마를 줬다고 진술했다고 기자에게 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검찰, K의원 금품수수 정황 포착 K의원 금품수수 진술 확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됐다. 낙종한 매체는 만회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나 수사팀으로부터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취재에 박차를 가했으며 자연스럽게 언론사 간의 보도 경쟁은 더욱 뜨거워져 갔다. 물론 검찰로부터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보도는 하지 않았지만 일부 기사의 경우 행간을 꼼꼼히 읽어보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만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수사가 시작된지 한달 정도 지났을 무렵, 코오롱TNS 등 핵심 로비스트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취재 경쟁은 극에 달했다. 일부 신문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금품 로비를 받은 것으로 취재된 정치인을 직접 실명 보도했으며, 뒤늦게 한 방송사는 이름과 함께 얼굴까지 화면에 내보냈다.

그러나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정치인들은 언론사를 상대로 즉각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으며, 일부 국회의원은 보도가 나가자마자 서울지검 기자실까지 직접 찾아와 해명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기껏해야 의혹을 부인하는 성명서를 내고 두문불출하던 여느 사건 때의 모습과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의혹 당사자를 실명 거론한 한 언론사에는 3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 보도가 나가면 다음날 서울지검 측의 공식 브리핑 내용은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우리는(검찰은) 해당 의원을 한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고 강조, 취재원이 검찰이 아님을 공공연히 밝혔다. 하지만 수사팀은 당시 언론이 핵심 취재원으로 삼았던 CPP코리아 김모 전 사장에 대해서는 100% 믿는다 고 말해, 기자들은 김 전 사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진술과 동급의 신뢰도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특수1부 검사들이 모두 투입돼 4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그동안 언론에 거명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10~20명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 가운데 어느 하나도 밝혀진 게 없이 수사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 언론사로서는 수사팀이 100% 신뢰하는 사건 당사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기사화한 것 뿐이라며 오히려 검찰의 수사력 부족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언론사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실명 보도 등이 해당 정치인들의 명예를 직접 훼손시키는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이 사건은 독자나 시청자를 위해서라면 비리 당사자를 실명 보도하는 것이 좀 더 진전된 서비스일 지 모르나, 자칫하면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미확인 보도의 위험성

굿모닝시티 사건은 이 회사 대표 윤창열(구속기소)씨가 쇼핑몰 분양계약자 수천명으로부터

3,000여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일부는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요 사건 중의 하나였다.

서울지검 특수2부가 지난 6월 본격 수사에 착수,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이 사건은 수사가 한창 이던 7월 우리 언론사에 잊혀지지 않을 초대형 오보 사건을 냉았다. A일보는 실세 정치인과 지방 자치단체장 5명이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이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1면 머릿 기사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열흘 이내 비슷한 크기의 기사로 당사자와 독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정보도를 냈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검찰은 수사 초반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윤씨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건은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하는 양상이었다. 더욱이 분양계약금 3,000여억원과 대출금 등 모두 5,000여억원의 행방이 규명되지 않은 데다, 윤씨가 정·관계에 끊임없이 줄을 대려 한 정황 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매우 비중 있는 기사로 취급했다. 월드컵 휘장비리 사건처럼 이니셜로 처리되는 정치인들이 신문 지상에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게이트의 단골 메뉴인 수사기관의 비호 의혹도 제기돼 윤씨가 지난해 6월 이미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그 이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으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50억~200억원이 정치권에 뿌려졌다는 굿모닝시티 주변 관계자들의 발언도 나왔다. 이른바 윤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 인사 수십여명의 이름이 담긴 3~4종의 윤창열 리스트가 검찰 주변과 정가 등에 떠돌았던 것도 이 무렵이다.

A일보는 여권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취재한 결과, 실세 정치인 5명이 굿모닝시티에서 돈을 받았다는 확증을 갖고 이들을 7월16일자에 실명 보도했다. 그 때만 해도 사건 관련자들을 이니셜로 보도하던 터라 이 보도의 파장은 컸다. 그러나 검찰은 확인된 것이 아니다 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으며, 현 정부 실세 중의 실세인 당사자들은 해당 언론사에 강력히 반발했다. 오히려 다른 매체에서는 A일보와 당사자들간의 공방전이 기사거리가 됐다.

8일 뒤인 7월24일자에 A일보는 1면에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굿모닝시티 분양비리로 구속된 윤창열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원기 민주당 고문 등 5명에게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건넸다고 진술했다는 16일자 본보 A1면 머리기사는 엄정한 자체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본보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검찰이 윤씨에게서 민주당 김원기 고문,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이해찬 신계륜 민주당 의원에게 거액을 건네줬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검찰은 그 같은 진술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하 생략)

A일보는 또 정정보도 아래 상자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본보는 이번 기사와 관련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점 본보를 아끼고 신뢰해온 독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한 김원기 민주당 고문,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이해찬·신계륜 민주당 의원,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손 지사의 형 및 관련 회사에도 사과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이하 생략)

A일보가 이 같은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에 이어 당시 기사 작성과 편집에 관여한 기자와 간부를 자체 징계 처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혐의가 드러났다면 A일보의 보도는 결국 특종으로 인정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확인 오보로 결론 난 상태이다.

이 사건은 각 언론사의 편집국장과 부장 등 간부들은 일선 취재 기자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스를 바탕으로 한 기사를 요구하는 등 기존 취재 관행의 문제점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 제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수사기관의 언론플레이?

앞의 두 사건은 보도로 인한 당사자들의 인권침해가 언론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송두율 교수 사건 같은 경우는 보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만하다.

지난 9월22일 37년 만에 입국한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에 침예하게 대립해왔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11월19일 두 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 결과와 그동안의 자료 등을 토대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 인물로 규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송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박정삼 국가 정보원 2차장과 박만 서울지검 2차장,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다음은 이 단체의 고발장 주요 내용이다.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경 우에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범죄행위가 가장 극단적으로 벌어진 것이 바로 송 교수 사건이다. 국정원 박정삼 차장은 정 의원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일방적 조사 내용을 언론 기관에 공표하기로 작당하고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유출시켰고, 정 의원은 이 내용을 국정감사 직후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또 검찰 수사 책임자인 서울지검 박만 차장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매일 기자들에게 수사브리핑 이란 형식으로 공식·반복적으로 범죄 행위를 자행하였다. 수사기관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한 이 같은 언론플레이로 송교수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명예를 훼손당했다. 송 교수는 법정에서 단 한마디도 하기 전에 이미 해방이후 최대간첩으로 낙인 찍혔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자로 지목된 수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대개 이미 범죄자로 각인된 이후였다. 우리 고발인단은 현재 송 교수에게 덧씌워진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고발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막고자 한다.

검찰은 또 송 교수를 기소한 직후 기자들에게 송 교수가 아직도 김일성 주석을 존경한다고 말

하더라 고 넌지시 알려줘, 일제히 언론들이 이 내용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당시 검찰이 송 교수의 구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 측과 검찰은 이 뿐이 아니라 수사기간 내내 일촉즉발의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이후 송 교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은데 대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 입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송 교수 사건의 경우 언론사 고유 색깔에 따라 보도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사팀의 브리핑이 기사 내용과 수위 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취재 자료가 되는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이라고 검찰이 공개할 경우, 기자가 짧은 시간 내에 자체적으로 취재해 검찰의 발표 내용을 뒤집어 기사를 쓰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다. 이 경우 송 교수측의 반론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의 판단만 기자에게 맡겨진다.

이런 점에서 송 교수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은 취재와 기사작성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3. 피의사실 공표죄의 딜레마

검찰과 경찰 등 사건담당 기자와 수사기관 사이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이 형법 126조인 피의사실 공표죄이다.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기간 종사자들은 공소제기 전에는 피의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검찰 담당기자는 모두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야 할 판이다.

예나 지금이나 기사 구성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사 내용이 사실(Fact)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 기자는 수사기관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시간과 정력을 검찰이 수사 중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할애한다. 이 때문에 어느 매체가 검찰 수사 사안 임을 전제로 단독 보도를 내보냈을 때 이 기사가 팩트인지 더 나아가 특종인지 여부는 검찰이 확인 해주기에 달려있다. 특히 관련자 소환 등 단순한 팩트 하나를 무심코 훌릴 수 없는 법조 기자들에게 검찰 구성원들은 다른 출입처의 구성원보다 훨씬 버거운 존재들 임에 틀림이 없다.

더욱이 검찰은 상황에 따라 대언론관계에서 피의사실 공표죄까지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월드컵 휘장사업 비리 사건과 굿모닝시티 사건 등에서는 이 죄를 거론하며 수사 내용의 공개를 꺼렸지만, 송 교수 사건에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등 검찰의 상황에 맞춰 피의사실 공표죄를 내세울 수도, 슬그머니 감출 수도 있는 것이다.

법대로라면 현재 대검 중수부에서 진행중인 대선 비자금 사건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브리핑은 대부분 불법이다. 기소는 고사하고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수사의 기초 단계에서부터 피의 사실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처벌 문제는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만약 기업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이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고발할 경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검찰은 기소 전까지 굳게 입을 다물고 언론은 기다렸다가 재판이 시작되고부터 기사를 작성해야 할까. 언론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부정부패 등에 대한 감시와 고발이다. 따라서 이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

는 것도 당연히 언론의 몫이라고 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모든 사안을 비밀에 붙여버린다면 팩트를 확인할 곳이 없는 기자들은 더욱 기사 쓰기가 어려워 지기 때문에 감시가 부실해지기 마련이다.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사건 관련자는 철저한 적용을, 검찰은 탄력적 적용을, 언론은 소극적 적용을 바라고 있어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4.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위에서 올해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봤다. 수사 관련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는 언론사간의 과열 경쟁이나 미확인된 내용의 기사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타났다.

일단 보도로 인한 피해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기고 반론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100%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언론사는 자기 검열 시스템을 강화하고 취재 기자는 보다 정제되고 정확한 기사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 환경이 수용자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도로 인한 피해를 간과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수개월 전 서울지검은 소환된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청사 내에서의 사진 촬영을 금지했다. 매우 비중있는 인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키로 하고 연예인 등 그 외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는 초상권 보호와 무죄 추정원칙 등에 따라 언론사들에게 사진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초 일부 언론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작지만 큰 실천인 셈이다.

아울러 최근의 명예훼손 등 일부 소송의 경우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도 임에도 불구하고,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때이다.

피의사실공표죄와 수사사항 공표의 한계

이완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I. 들어가는 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위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이러한 여론의 형성과 전달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적 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언론의 보도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의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취재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협조하는 것 또한 국가기관이 기본적으로 취하여야 할 태도라 하겠다.

한편, 이러한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의 반대 측면에 이에 못지않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있는바 이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구체적으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위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수사사항 특히 특정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보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여 명예와 인권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러한 보도의 취재원이 수사기관인 경우는 그 권위로 인하여 혐의사실일 뿐임에도 이미 '사실'로 믿게 하는 효과를 가중시키므로 불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법익의 비교형량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 형법에는 다른 나라에서 그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피의사실공표죄가 규정되어 있어 이와 같은 법익의 형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동안의 언론 취재의 관행은 취재원으로서 수사기관에 의존하는 바가 커으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전혀 외면할 수 만은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나아가 언론의 양적 팽창에 따른 치열한 취재경쟁과 이에 따른 추측성 보도 내지 형사 피의자에 대한 단정적 보도 등 인권 침해적 요소들이 수사기관을 상시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에 노출되게 하여 왔으며, 나아가 언론사들이 외과 취재를 통해 얻은 개개 사실을 연결하여 기사화하거나 추측성 기사를 쓰면서 취재원으로 검찰관계자 등을 언급함으로써 마치 검찰에서 유출한 것으로 오해를 받게 하는 등 문제도 있었다.

최근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사항 공표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수사사항 공표는 무조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만약 허용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공표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사실공표죄 시비로부터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러한 한계에 대하여 언론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적정한 취재관행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절실히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발표를 통하여 피의사실공표의 허용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

되어야 할 점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II.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공표의 허용기준

1. 피의사실공표죄의 의의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가. 국가의 범죄수사기능과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견해

본죄의 입법취지를 피의사실이 공표됨으로써 증거인멸 등으로 수사에 초래될 장애를 막고 피의자의 명예 손상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견해로서 즉 국가의 범죄수사기능(국가적 법익)과 피의자의 인권(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으로 다수설이다.²³⁾

국가의 범죄수사기능을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인정하는 근거는 본죄가 국가적 법익 침해에 관한 범죄의 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죄 다음의 범죄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 그런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그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이고 비밀누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본죄의 법정형이 3년이하의 징역으로서 비밀에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도 피의사실을 발설함으로써 국가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는 점 등에 있다.

반면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법익으로 인정하는 근거는 본죄를 수사기관과 같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기관의 개인적 법익 침해를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와 같은 유형으로 보는 것이다.

나.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견해

본죄의 보호법익을 피의자의 인권만으로 보고 본 죄를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 파악하는 견해이다.²⁴⁾

다. 검토

만약 국가의 범죄수사기능만을 보호법익으로 본다면, 수사기관이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는 이미 범죄수사기능에 대한 장애가 없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며,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의사절차를 밟지 않은 개인적인 발설만이 본죄를 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개인의 명예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는 본죄가 아니라 따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위법성조

23)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804면,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667면,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738면

2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628면

각여부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본죄의 보호법익을 피의자의 인권만으로 본다면, 수사기관의 공식적 의사결정에 의한 발표일 지라도 그 자체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침해된 피의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적 법익간의 비교형량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수사기관의 공식적 공표이외에 사적인 발설 등에 의하여 공표됨으로써 수사진행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이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점, 본죄가 국가적 법익 침해에 관한 장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의 범죄수사기능도 본죄의 법익이 되고, 본죄의 큰 역할이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점에도 있는 점에서 다수설의 견해와 같이 두가지 모두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형법제정당시의 국회 의사록에 보면 제안설명자인 엄상섭 의원은 본조의 신설 취지가 수사를 받는 사람의 혐의사실이 신문에 나고 하는 등으로 신용유지나 명예유지 등에 곤란을 받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고,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범죄혐의자로서 받는 불이익을 제거하도록 신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고 있고²⁵⁾ 찬성자인 조주영 의원도 수사기관이 불필요하게 신문에 발표한다든지 외부에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위에 있는 것을 유행으로 삼아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²⁶⁾을 감안하면 본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피의자의 명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피의자의 인권이라고 하겠다.

3. 공표의 허용기준

가. 「공공의 이익」에 관다는 이유의 위법성 조각여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규정이 있는바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긍정설과 피의사실공표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본죄는 국가의 범죄수사기능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큰 혐의사실의 공표를 공소제기기간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엄격히 통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는 점 등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서의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여야 수사기관의 공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발설하면서 함부로 공공의 이익 주장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죄에도 형법 제310조와 같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유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자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나.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의 위법성 조각여부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이유로 한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

25) 제16회 국회정기회의 12차회의 엄상섭 의원의 발언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령제정자료

집(1) 형법, 1990, 343면

26) 위 회의에서 조주영 의원의 발언임, 앞의 책, 346-347면

사유는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수사기관이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에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공식적 절차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의 경우는 국가의 범죄수사기능 침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피의자의 인권 침해의 문제가 남을 것인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적 법익과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엄격히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표로서 용인될 수 있다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²⁷⁾

다.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의 허용기준

피의사실의 공표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를 판례 및 외국의 실무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표의 절차와 형식

수사기관 내부절차를 밟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공식적 절차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검사가 검찰청 내부의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문기자를 상대로 보도를 전제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는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어렵다.²⁸⁾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는 공보관이며²⁹⁾, 특별한 경우 공식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수사검사 등으로 하여금 공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는 그 수사검사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라 하겠다.

(2) 공표목적의 공익성, 공표내용의 공공성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치인, 고위공직자, 일반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차지하거나 광범위한 명성을 가진 자 등에 대한 수사사항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³⁰⁾ 따라서 이러한 공익성, 공공성이 없는 사건에 있어 피의사실 공표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려울 것이다.³¹⁾

미국연방검찰실무지침에서 수사사항 공표를 이미 실질적인 공공성을 가지게 된 사안에서 허용하고 있고³²⁾,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대언론지침」 제1항에서 '피의사실의

27) 대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사건,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사건,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659면, 임웅, 앞의 책, 806면

28) 대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사건 참조

29) 외국의 경우도 수사사항의 공표는 공보관을 통하여도록 하고 있다. 미국연방검찰실무지침(U.S. Attorney's Manual), §1-7.220.,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부의 대언론준칙(Richtlinien für die Zusammenarbeit mit der Presse AV d.JM vom 25. Juni 1981- JMBI. NW S. 169-) 제1장 참조

30) 미국에서 공직자, 공직인 인물에 대한 보도의 경우는 악의가 없는 한 면책을 하고 있고 특히 입법, 행정, 법집행절차 등 공적 절차에 있어서 행해진 직무상 표현은 절대적 면책을 받고 있는 점 참조,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93-121면

31) 이혼소송중인 주부의 청부폭력사건 피의사실 공표에 있어 이런 사안은 국민의 정당한 관심대상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한 대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사건 참조

32) 미국연방검찰실무지침 §1-7.530. B

범위와 성격, 관련자의 인격이나 지위(예컨대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광역적인 언론보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은 검찰의 승인을 받아 피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것³³⁾ 등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표의 필요성

언론사의 취재로 인하여 이미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 있어 언론사의 과다한 취재 경쟁으로 인한 오보, 추측 등을 방지하고 객관적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 복지를 위하여 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³⁴⁾

(4)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된 피의사실은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진실이어야 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의 발표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그 공표된 사실이 진실할 것으로 강하게 신뢰하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표하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³⁵⁾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은 특히 이와 같이 공표 당시 수사상황으로 보아 피의사실의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³⁶⁾

(5) 공표 사실의 범위

공표하는 내용은 '사실'에 한정하여야 하며,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공공의 이익을 형량하여 피의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넘어 범행동기, 구체적 방법, 향후 수사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은 허용범위를 초과한다.³⁷⁾ 특히 피의자에 대한 가치평가, 범행의 비난성 및 피의자의 유책성에 대한 언급 및 추론은 허용되지 않는다.³⁸⁾

(6) 표현방법

33) Zusammenarbeit mit den Medien in Ermittlungsverfahren RV d, JM vom 15. August 1994, §1

34) 미국연방검찰실무지침 §1-7.530. B 참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대언론준칙」 §2 도 공공에 알릴 필요를 공표요건으로 하고 있다.

35) 대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36)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담당검사가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측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대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대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경찰이 살인사건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의 자백만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건의 원인과 동기 등을 설명한 사안에서 진실이라는 증명도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한 경우(대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청부폭력혐의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들이 부인하고 있음에도 고소인들의 진술만을 믿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취재기자들을 불러 사안내용을 설명하고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한 사례(대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37) 대판 1999. 1. 26. 선고 97다10215사건에서는 회사비밀서류유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행동기, 유출한 회사의 기밀 내용, 경쟁업체에 대한 향후 수사계획 등을 발표한 점도 지적되었다.

38) 독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대언론준칙」 §2 참조

피의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피의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이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도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발표되는 내용은 혐의사실일 뿐이며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III. 공표의 한계에 관한 구체적 검토

1. 실명 확인

수사사항을 공표함에 있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정치적 사건 등 국민들의 큰 관심 대상이 된 사건의 경우는 예외로 실명 공표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³⁹⁾

2. 사진 촬영

피의자의 신원 확인 자료에 대해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과 같이 피의자의 얼굴도 공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거나, 언론으로 하여금 관서 내에서 피의자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관서 외부에서 수사기관과 상관없이 언론이 피의자의 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관여할 일이 아니나, 수사기관이 수사 관서 내부에서 언론에 사진 촬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정치인 등 주요 인물인 경우 실명 자료의 공개가 가능하지만 이들의 경우도 수사 관서 내에서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것은 앞에서 든 필요성 및 최소한도의 공표라는 기준에서 볼 때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다.

3. 수사단계별 검토

(1) 소환사실의 공표

소환사실 자체는 피의사실이라 할 수 없으나, 소환이 피의자 자격으로서의 소환이며, 소환이유가 함께 공표되면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될 것이다.

그런데 소환사실의 공표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이전이고, 따라서 피의자의 변명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단계이므로 혐의사실의 객관성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있다가 보기 어려우므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공표되는 소환이유도 엄격히 최소한에 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9)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대언론준칙」에서는 소위 시대사적 인물(Personen der Zeitgeschichte)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원에 관한 자료의 공표가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

(2) 소환조사 완료후

미국연방검찰실무지침 §1-7.550은 재판과정에서의 편견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성격에 관한 언급, 피의자가 자백하는 지 등의 진술내용 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 각종 증거조사결과, 증인으로 채택될 사람들에 대한 언급, 유무죄 전망에 대한 언급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다. 특히 미국에 있어 일반 국민이 사실판단을 하는 배심제도 하에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배심원들이 가지게 될 편견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소환조사 후 피의자가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 정도의 공표는 필요성과 최소한의 기준 하에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직업법관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재판과정에서의 편견 방지문제가 미국 보다는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피의자가 스스로 기자들과 만나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이 먼저 피의자의 자백여부를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극히 적을 것이다.

특히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함에도 참고인 등의 진술만으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듯한 공표를 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의 집행 사실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의 집행사실은 집행 후에는 공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압수, 수색의 근거가 된 혐의사실은 공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압수, 수색의 장소 등도 공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4) 체포, 긴급체포, 구속 등의 경우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인물에 대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구속사실은 국민의 알권리의 관점에서 공표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필자의 생각으로는 나아가 이런 경우는 언론의 추측성 오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본다.⁴⁰⁾

물론 체포, 긴급체포의 경우는 구속 이전 단계이고, 구속영장의 발부는 혐의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 것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각 단계에 있어 공표되는 사실에는 내용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구속영장 자체를 공표하거나 구속영장 범죄사실 자체를 문자대로 공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이라는 공표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간략한 요지를 공표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IV. 수사기관의 대언론관계 및 언론의 취재관행 개선의 방향

1. 문제점

40) 독일 검찰의 보도자료의 상당부분이 체포 또는 구속후 배포된 보도자료이다.(독일 연방법무부 및 각 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수사관련 보도자료를 볼 수 있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사사항에 대한 언론보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수사기관에 취재원을 의존하는 정도가 커고,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수사기관도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협조를 하여 주거나 언론의 적절하지 않은 방법의 취재에 대하여도 문제삼지 않아온 관행에 있다고 본다.

나아가 언론의 양적 팽창에 따른 치열한 취재경쟁으로 인하여 사건관계인, 주변인 등에 대한 외과취재가 과열되고 외과취재를 통해 얻은 개개사실을 연결하여 기사화하거나 추측성 기사를 쓰면서 취재원으로 검찰관계자 등을 언급함으로써 마치 검찰에서 유출한 것으로 오해받게 하기도 하고, 혐의사실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도 단정적인 낙인성 보도를 하는 문제도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인권의식 고양으로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때가 되었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상시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고, 언론은 언론대로 명예훼손의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2.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한계에 대한 언론측의 이해 필요

이러한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는 먼저 앞에서 논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한계에 대하여 언론측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언론은 담당검사나 담당 경찰관에 대해 직접 취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피의사실공표죄의 책임을 지게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검찰에서도 공보관으로 언론창구를 통일하여 왔고 제도가 많이 정착되고 있으며, 포토라인을 폐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왔는바 이렇게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언론측이 이해를 하여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앞에서 상세히 논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공표의 경우도 공소제기전 수사사항 공표는 매우 엄격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론이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보관의 브리핑 등이나 문답 등을 통하여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계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3. 언론사의 취재원 다양화 노력 필요

다음으로 언론사도 이제는 취재원을 다양화하고, 취재 기법도 다양하게 개발하여 취재원으로서 수사기관에 의존하는 정도를 빨리 줄여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행해지고 있는바 중요 사건 수사에 있어 소환사실의 공개 등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하지 않는 것이 향후의 올바른 방향일 것인데 이런 경우에 언론사들이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4. 수사사항 보도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배려와 보도기준의 마련

끝으로 수사사항 보도에 따라 개인이 입게될 인권침해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배려하

며, 이를 위하여 언론사들이 모여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자체적 보도기준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